

#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(대안)

## 검 토 보 고

### I. 주요내용

- 현행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된 ‘럼피스킨병’을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하여 방역관리 기준을 합리화함(안 제2조).
-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의 장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가축전염병 의심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(안 제5조).
- 살처분 및 사체 등을 처리하는 가축폐기물처리업의 정의를 마련하고, 등록제도와 정기점검 등 가축폐기물처리업 관리체계를 신설함(안 제5조의5 등).
-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정의를 신설하고, 병원체의 분리·이동·분양 신고 및 안전관리 기준·점검 근거를 마련하며 위반 시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함(안 제14조 등).
- 사육제한 명령의 이행이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, 그 명령에 갈음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9조의3).

## II. 검토 의견

### 1.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·분양 및 이동에 관한 적용례 신설

- 현행법 제14조제1항과 제2항은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한 경우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보고하거나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, 개정안은 제2조제9호에서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정의<sup>1)</sup>를 신설하며 제14조제1항은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한 자가, 제14조제2항은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이동하거나 분양받으려는 자가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고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8항까지는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- 개정안은 제14조에 대해서 부칙에 적용례를 두고 있지 않는데, 현행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병원체는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 법 시행 전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하였으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보고나 신고를 못한 경우 이 법 시행 이후에도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보고로 신고를 갈음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.
- 따라서, 개정안 제14조의 적용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 법 시행 이후 고위험가축전염병을 분리·이동하거나 분양받으려는 경우부터 개정안이 적용되도록 부칙에 적용례를 두는 수정의견을

---

1) 안 제2조제9호 “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”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공중위생 또는 축산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말하며, 그 구체적인 종류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
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마련함.

### <안 부칙 제2조에 대한 수정의견>

| 개 정 안 | 수 정 의 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신 설> | 제2조(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·분양 및 이동 등에 관한 적용례)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·이동하거나 분양받으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 |

- 그 밖에 체계·자구를 검토한 결과 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자연인만 해당되므로 해당 선고를 받는 ‘자’를 ‘사람’으로 변경하는 등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, 자세한 수정 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.

(전문위원 최 기 도)